

2006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 해설

구 본 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행정사무관

I. 머리말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2005년 지방세법령 개정은 국세 가산금과의 형평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시 가산금율을 인하하고, 납세자의 편의와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도입하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취득세 과세대상에 승마회원권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원자력발전소를 각각 추가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재산세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인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토록 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2005년도 지방세법 개정안은 2005. 8. 4.부터 2005. 8. 14.까지 관계부처 의견협의, 8. 25부터 9. 14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5. 11. 16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채수찬의원이 발의한 8. 31 부동산대책 입법안, 김춘진의원이 발의한 200원이하 저가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조항 삭제 법안 등을 통합·조정하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으로 2005.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하위 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2005. 12. 31에 법률과 함께 공포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하에서 2005년에 개정된 지방세법령의 주요내용과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및 이유

1. 지방세 체납액 가산금 인하조정 (제27조제1항)

현행	개정
○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u>100분의 5</u> 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	○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u>100분의 3</u> 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

<개정이유>

○ 국세 가산금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가산금을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인하조정

2. 체납자 명단공개 근거 신설(제69조의2신설)

현행	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발생일부터 <u>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 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음</u> ○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 ○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

<개정이유>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방지 및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여건에 맞게 1억 이상 체납자명단을 공개(국세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함)

3. 「납세자보호관」 제 신설(제71조의2신설)

현 행	개 정
<p><신 설></p>	<p>○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음</p>

<개정 이유>

○ 심사청구 등 사후적 권리구제수단으로는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와 질차적 권익침해의 구제에는 한계가 있고,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납세자의 권리보호규정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설치 필요

-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을 활용함으로써 납세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제절차 개선 및 준사법적절차 본격도입 등에 따른 자치단체 구제기능을 보완하는 데 기여할 것임

4. 불복청구 「선택적 2심제」 도입(제74조)

현 행	개 정
<p>○ 심사청구 이의신청을 거쳐야 심사청구 가능</p>	<p>○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심사청구 가능</p>

<개정이유>

○ 현재는 심사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쳐야 하나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

※ 과세전적부심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은 「선택적2심제」 도입에 따라 삭제

5.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조항 신설(제86조의2신설)

현 행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과세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자료제출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개정이유>

○ 지방세법에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명확한 자료제출 의무조항이 없어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조항 신설

6. 승마회원권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제104조등)

현 행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마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함 ※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개정이유>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승마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

7.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 보완(제105조제6항)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개정내용>

○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단서 중 일부규정(과점주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 취득세 비과세) 삭제

<개정이유>

○ 동 규정은 과점주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이 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대법원 99두6897, 2001. 1. 30)으로 납세자 혼란방지를 위하여 삭제

※ 대법원 99두6897(2001. 1. 30) : 위 단서 소정의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님

8.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 합리적 개선(제111조)

현 행	개 정
○ 개인간 거래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공시가격 등)중 높은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함	○ 주택가격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규정(시장·군수가 산정) ○ 개인간 거래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용 ※ 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부당행위(소득세법 제101조제1항)로 인한 취득 제외

<개정내용>

○ 주택가격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규정함
○ 2006. 1. 1. 시행예정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하여 검증된 부동산거래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부당거래행위는 제외함

9. 등기된 입목을 골프장 중과대상에 추가(제 112조제2항)

현 행	개 정
○ 취득세 중과대상인 골프장 - 골프장: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 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 취득세 중과대상인 골프장 - 골프장: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 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개정이유>

○ 미등기된 입목 식재비용만 골프장 조성시 지목변경으로 인한 비용에 포함되고, 등기된 입목의 식재비용은 지목변경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대법원 1999.9.3, 97누2245)되고 있어 과세형평상 구분 등록된 토지상의 미등기 입목과 같이 구분 등기된 토지상의 등기된 입목도 중과세대상으로 함

10. 복권당첨금 주민세 납세지 개선(제 175조제4항)

현 행	개 정
○ 복권당첨금 소득에 대한 주민세의 납세지는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해당 당첨복권의 판매지

<개정이유>

○ 로또복권의 당첨금은 국민은행 본점에서 지급하므로 주민세 세입이 서울에만 집중되어 세원의 불균형이 초래되므로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를 복권의 판매지 관할 시·군으로 개정

11. 주민세 수정신고납부 조항개선(제 177조의3제 1항)

현 행	개 정
○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계산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음	○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수정신고납부 할 수 있음 ※ 수정신고납부시 가산세 및 환부이자 배제

<개정이유>

○ 가산세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협력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납세지가 아닌 다른 시·군에 납부한 경우까지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 소득세할·법인세할의 납세지 판단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 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법인세할·소득세할 주민세를 납세지착오로 다른 시·군에 납부한 경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수정신고납부 가능

12.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 규정(제 187조 및 부칙 제5조)

현 행	개 정
○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05년 50%)을 곱하여 산정 <신 설>	○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토지 : 공시지가, 주택 : 공시가격 등)으로 함 ※ 부칙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이유>

○ 8.3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적절한 수준의 재산세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도별 순차적으로 인상하며,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인상시기를 2년간 유예(채수찬의원 대표발의안)

-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50%인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2006년부터 매년 5%p씩 100%까지 인상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2008년부터 매년 5%p씩 10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13. 재산세 납기에 따른 징수방법 개선(제191조제1항)

현 행	개 정
○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 :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단서 신설>	○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 :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u>다만, 5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가능</u>

<개정이유>

○ 주택분재산세의 세액 과다에 대한 고려 없이 2회로 나누어 고지하는 것은 소액인 경우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 및 인력 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 문제가 있으므로

○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함

14. 경·공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보완(제196조의3)

현 행	개 정
<신 설>	○ <u>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 납부</u>

<개정이유>

- 경·공매된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세는 낙찰자가 낙찰잔금을 납부한 날부터는 낙찰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지방세법상 공매된 자동차의 납세의무자 규정이 없어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일선 시군구에서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애로가 있음
 - 자동차를 경매·공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때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낙찰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

15. 자동차세 탄력세율제도 보완(제196조의5 제3항)

현 행	개 정
○ 특별시와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의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음	○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음

<개정이유>

- 자동차세는 특별시·광역시세이며 도의 경우에는 시·군세 임에도 특별시·광역시에만 세율조정권을 두고 있는 불형평이 있으므로
- 특별시·광역시에만 주어지던 자동차세 세율조정권을 시·군까지도 확대

16.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제229조제1항)

현 행	개 정
○ 담배소비세 세율 1. 흡연용의 담배 가. 쉐련 20개비당 510원 <u>다만,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의 쉐련은 20개비당 40원</u> 나. 파이프담배 50그램당 910원 다. 제3종 엽쉐련 50그램당 2,600원 라. 각련 50그램당 910원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040원 3. 냄새맡는 담배 50그램당 650원 ○ 판매가격이 100원이하의 담배는 영세율로 함	○ 담배소비세 세율 1. 흡연용의 담배 가. 쉐련 20개비당 641원 <단서삭제> 나.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다. 제3종 엽쉐련 50그램당 3,270원 라. 각련 50그램당 1,150원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3. 냄새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삭제>

<개정이유>

- 2004.12.30 담배소비세율 인상(510원→ 641원)시 지방세법시행령 제173조의 2(조정세율)에 규정한 세율을 법률에 규정하여 향후 담배소비세율 인상시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함
 - ※ 담배소비세율 추가인상(641원→ 772원)을 추진하였으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보류되는 관계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음
- 국내산 저가담배 생산중단 등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급담배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삭제함(김춘진 의원 대표발의안)

17.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제253조등)

현 행	개 정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대상 : 원자력발전 - 납세의무자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납세지 :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 - 과세표준 및 세율 :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

<개정이유>

- 원전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인접지역도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보전 등을 위한 재원 마련 필요
- 원전 피해대책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수요 대처 및 응급과세원칙상 기피시설인 원전에 대하여 지역개발세 과세필요(0.5원/kwh)

18.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세율 현실화(제254조 등)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의무자 :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 - 과세표준과 세율 :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의무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 과세표준과 세율 :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개정이유>

○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을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광한 광물」로 규정하고 있어 원석으로 판매하는 경우, 원석 또는 반제품 상태로 납품하는 경우 및 원료채광법인과 제품생산법인이 다른 경우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 개선 필요

○ 석회석 등 지하자원은 지역주민에게 분진, 환경오염, 산림훼손 및 도로파손 등을 시키므로 이를 복구하기 위한 재원을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마련하고, 최근 비현실적인 세율 현실화 필요

19. 지방세 감면 합리적 개선

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선(제261조제1항)

현행	개정
○ 자경농민의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 매각하는 경우 등은 50%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 자경농민의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 매각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나 <u>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함</u>

<개정이유>

○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시계획 등에 의거 2년이내에 수용되는 경우도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하여 다수의 민원 발생

○ 지방세법 제265조 내지 제290조의 다수가 추징시 “정당한 사유없이”라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제261조에도 규정 필요

-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나.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제266조제5항)

현행	개정
○ <u>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u> 등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 경감	○ <u>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u>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 경감

<개정이유>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기존 조합의 특정 경제사업부문을 규모화·전문화·효율화하기 위

해 설립된 것으로 기존조합과 감면범위에 있어 동일하게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의 범위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

다.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방세지원(제270조제1항)

현 행	개 정
○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에 「 <u>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u> 」 적용 대상자 추가

<개정이유>

○ 2004. 1. 2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160호)되어 2005. 7. 29부터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해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그 밖의 양로지원 등 제 지원이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실시되므로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라. 민간유치 사립대학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제272조제6항 신설)

현 행	개 정
<신 설>	○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u>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u>

<개정이유>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립대학시설도 사회기반시설이 되어

- 민간자본의 대학내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 지방세법 제106조 등에서는 국가(국립대) 등이 취득하는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는 반면,

- 사립대학이 취득하는 기숙사용 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발생 하므로,

○ 대학 등이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의 면제를 규정

마. 주택에 대한 거래세 부담완화(제273조의2)

현 행	개 정
○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주택에 한함)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 등록세는 100분의 50을 경감

<개정이유>

○ 8. 31대책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개인간의 주택거래시 취득·등록세를 감면함(취득세 2%→1.5%, 등록세 1.5% → 1.0%)

바. 지방이전 법인 및 공장의 감면기한 연장(제274조등)

현 행	개 정
○ 2005년 12월 31일까지 법인 또는 공장이 지방이전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 법인 또는 공장이 지방이전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 시한 삭제

<개정이유>

○ 지역간 격차가 크고 기업경쟁환경의 기초인프라가 미흡한 우리 실정에서 현행 지방이전을 위한 세제지원제도는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유인책이므로 지방세 감면기한의 연장 필요

사. 장학법인의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 명확화(제288조제5항)

현 행	개 정
○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당해 부동산의 임대수익금 중 100분의 70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한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단서신설>	○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

<개정이유>

- 장학법인의 임대용부동산 취득·등기시점에서는 임대수익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학금 지출도 없어 감면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하지 못하고 공실상태이거나 임대를 개시하였다하더라도 장학금을 과세기준일 이후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장학금중 임대수익금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과세기술상 불가능
- “임대수익금 중 100분의 70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한함”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당해 부동산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등에 대한 추정규정 마련

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법률 제6312호 부칙 제2조)

현 행	개 정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 서울 : 담배소비세의 50%를 2005.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 서울 : 담배소비세의 50%를 2010. 12. 31까지 적용(시한연장함)
○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 서울 : 2005. 12. 31까지 레저세의 60%, 2006. 1. 1부터는 20%적용	○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 서울 : 2008. 12. 31까지 레저세의 60%, 2009. 1. 1부터는 40%적용

<개정이유>

- 경직성 경비인 교원인건비 지급 등 교육재정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배소비세 및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 필요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50%) 적용시한을 2010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레저세분 지방교육세(60%) 적용시한을 2008년까지 3년간 연장하며 2009년 이후부터는 40%를 적용

20. 자동차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세 개선(부칙 제9조)

현 행	개 정
<신 설>	○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2㎡ 미만인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세 및 자동차세 1.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 2. 2010년에는 화물자동차세액에 승용자동차 세액과 화물자동차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에는 화물자동차 세액에 승용자동차 세액과 화물자동차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 지방교육세 : 2009년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

<개정이유>

- 지방세법부칙 특례조항으로 화물자동차 분류기준 강화로 승용자동차 기준이 적용되는 차량에 대하여 향후 4년간 과세유예기간 설정과 단계별 세율인상을 규정
 - 2005. 12. 31이전에 화물자동차로 등록한 경우에도 승용자동차로 과세하여 동일차량에 동일세율을 적용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03. 11. 22) : 화물자동차의 분류기준이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 1㎡에서 2㎡이상으로 상향조정('06 시행)
- 종전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되어 배기량기준으로 과세됨에 따라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 2005. 12. 31이전에 화물자동차로 등록한 경우에도 승용세율로 과세하여 실질과세 및 공평과세 원칙 확립
 - ※ 2㎡미만자동차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21. 주민세 가산세 적용조항 개선(부칙 제8조)

현 행	개 정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세 가산세에 대한 적용특례 - 2003. 12. 30이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소득세 할·법인세할 주민세에 현행의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3)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가산세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개정이유>

○ 미납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과세하는 구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 및 제4항(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위헌결정(2004헌가21, '05. 10. 27)됨에 따라

○ 위헌선고된 동규정은 미납기간을 고려하는 방향에서 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사항이므로

○ 2004. 1. 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주민세에는 영향이 없으나 2003. 12. 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주민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

Ⅲ. 지방세법 시행령 및 규칙 주요 개정내용 및 이유

1.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요건 개선(영 제34조)

현 행	개 정
○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에 있는 경우에 그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의로 인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를 하여도 반송된 때에는 징수유예 가능	○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의로 인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를 하여도 반송된 때에는 징수유예 가능

<개정이유>

○ 관할구역외 주소를 둔 납세자와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둔 납세자라 하더라도 주소(거소) 불명의로 인하여 고지서가 반송되는 경우 징수유예가능토록 개선 필요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및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영 제52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신 설>	○ 명단공개 제외 사유 1.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부단체장 - 위원 : 지방세 담당과장, 5급 이상 공무원 중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3인,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자 4인 - 임기 : 2년 - 의결 :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 명단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명단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	---

<개정이유>

-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담보를 위하여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체납정보 공개대상으로 하되,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하였거나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부채부동산 소유자의 범위 확대(영 제79조의3제2항)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 부동산소유자에게는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미적용 ※ 부채 부동산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 부동산소유자의 범위에 법인 포함 ※ 부채 부동산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

<개정이유>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간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 부채부동산소유자인 법인사업자도 대체취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

4.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기준(영 80조의4)

현 행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

<개정이유>

○ 취득세 부과를 위한 시가표준액이 되는 공동주택의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역·면적·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당해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

5. 고급선박 기준가액 조정(영 제84조의3제5항)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선박의 기준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가액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표준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함

<개정이유>

○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선박의 기준이 '73. 5. 5.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6667호) 제84조의3 제3호에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선박으로 규정한 이후 현실화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가표준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

<개정이유>

- 소득세 확정 신고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환부대상이 2이상인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주소지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하는 방식은 자치단체별 소득구분이 불분명하여 과오납환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 종합소득확정에 따른 주민세 환부지를 소득세와 동일하게 모두 주소지관할 자치단체로 개선

9. 재산세 과세대상 조정(영 제 132조제4항)

현 행	개 정
<신 설>	○ 분 리 과 세 대 상 - 농 수 산 물 유 통 공 사 가 농 _____ - _____ _____ 산 대 상 토 - 「 _____ 」 「 _____ _____ _____ - _____ _____

<개정이유>

- 터미널 경영 압박 및 철도 등 SOC와 형평성 문제 제기, 터미널사용료 인상시 대중교통요금 인상 등 문제로 터미널용 토지 분리과세 필요
 - ※ 현재 별도합산세율로 계산한 후 조례로서 50%를 감면하고 있음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수산물유통시설용 토지도 농·수협외의 구관사업용 토지 및 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유통시설용 토지 등과 과세형평상 분리과세 필요
-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과세형평을 위하여 분리과세 필요
- 수출진흥 및 관련산업에 대한 연관효과가 큰 무역전시장에 대한 세제지원 및 산자부의 무역전시장에 대한 공공성 강화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무역전시장을 분리과세대상으로 함

10. 재산세 비과세 대상 확대(영 제 137조제2항제6호)

현 행	개 정
<신 설>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비과세 대상에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임야 추가

<개정이유>

-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는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므로 사유재산권의 침해와 산업활동에 제한을 가져옴
- 재산세 비과세 대상임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등)보다 제한이 강하므로 백두대간보호지역안의 임야 비과세 추가

11. 특수자동차의 범위 조정(영 제 146조의4제1항제6호)

현 행	개 정
○ 적재정량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는 화물자동차로 분류하여 자동차세 과세	○ 적재정량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는 특수자동차로 분류

<개정이유>

- 견인차는 특수 차량으로 분류되는 데에도 피견인자동차는 화물자동차로 분류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것을 적재정량 8톤초과인 피견인 자동차는 특수자동차로 분류하여 통일성을 유지
- 8톤 초과로 한 이유는 8톤 이하 차량을 특수자동차로 분류할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출입 물량을 운송하는 피견인 차량의 물류비 절감과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8톤초과 피견인 자동차에 대하여 특수자동차로 함

IV.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지방세법령 개정은 공평과세 및 납세편의 증진, 지방자주 재원 확충과 8.31부동산대책 추진 등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세계개편으로, 그 중

에서 8.31부동산 대책에 따른 입법은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으로 지난해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이어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부동산정책의 기본 틀 구축의입법조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승마회원권을,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에 원자력발전소를 각각 추가하고 지하자원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인상하였는데, 그중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는 그 간 수차례 걸쳐 추진해왔음에도 관계부처 및 관련업계의 강력한 반대로 입법이 성사되지 못했던 과제로서,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기피시설에 대한 과세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계속되는 관계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완료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발전의 바탕이 되는 지방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신세원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원전에 대한 과세추진은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었고, 앞으로도 폐광지역의 카지노장에 대한 지방세과세 추진이나 현재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골프장, 카지노장, 콘도 등의 입장행위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비과세·감면제도의 구조조정은 물론,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 받는 방안(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이양 등)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인 지역간·지방자치단체간의 세원불균형 완화로서 현재 국회에 우원식(서울, 노원을)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있는 서울시의 세목교환에 대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나아가 광역시와 도의 세원재배분도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자치단체가 세원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 같이 참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

